

월드미션대학교  
규정(방안) 및 절차

제목: 성희롱, 스토킹 및 성폭행 관련 방침안

적용 날짜: 2016 년 8 월 15 일

책임자: 총장

담당관: 학생처

1. 차별대우에 관한 성명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로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야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토대를 바탕으로, 기독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개인적 정직성과 시민성 그리고 상호존중을 증진시키는 학업적, 사무적 그리고 생활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차별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전념한다.

성적 차별은 개인의 근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월드미션대학교(WMU)는 형식과 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성적 차별을 심각한 범법 행위로 간주한다. 이 정책은 학교 근무자, 학생, 그리고 제 3자로 인해 생기는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가정 내 폭력 및 연애 폭력 그리고 스토킹 등을 성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들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Student Handbook 과 Faculty Handbook 에도 설명되어 있다.

1972 년 교육개정안의 Title IX 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이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보조를 받는 활동에서 성적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거나 정부보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성별에 의하여 혜택을 박탈 당하거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없다”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codified at 20 U.S.C. section 1681,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 at 34 C.F.R. Part 106) 라고 명시되어 있다.

Title IX 에 기반하여, 성적 차별의 범주에는 성희롱을 비롯, 원치 않는 성적 접근 혹은 강간, 불법 신체 침해 그리고 강제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2013 년에 제정된 연방법, Campus SaVE Act 는 가정 내 폭력, 연애폭력 그리고 스토킹을 Title IX 의 성 차별 범주에 포함한다.

WMU 는 법에 위반되는 성 차별을 용인하지 않으며 교육과 정책을 통해 공동체 내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반자에게는 올바른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다. 성 차별이 보고될 경우, 학교는 신속하고 공평하게 사건의 문제점과 경위를 파악할 것이며, 그 후에 있을 보복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 용어 정의:

**합의된 동의** - 합의된 동의란 성관계가 자발적인 인식과 합의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간의 동의와 합의 하에 성 관계를 갖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충분치 않은 저항 혹은 침묵은 합의된 동의라고 간주 할 수 없다. 합의된 동의는 성 관계를 갖는 동안이나 혹은 예기치 못한 성 관계가 일어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현재의 연애 관계나 과거의 성관계 여부가 합의된 동의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

합의된 동의는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합의된 동의란, 신체적 무력이나 강제적 위협, 협박하는 행위 혹은 강압에 의해 얻어질 수 없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가하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 강압적 행동과 유혹하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성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성 관계를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음에도 그 의사가 묵살된다면 그것은 강압으로 간주된다.

합의된 동의 정책이행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성폭력행위자의 주장을 합당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술이나 상대방의 무자비함으로 인해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이 합리적인 절차없이 고소인의 합의를 이끌어냈을 경우

증거의 우월성하에, 성폭력 행위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경우, 긍정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잠들어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마약, 술, 혹은 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여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 할 경우

만일 이미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의식없음 혹은 무의식 상태를 의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과 성 관계를 갖는다면,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폭행 행위에 해당된다.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하며 그들의 성적 행동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 성폭행을 포함, 모든 성적 차별 범주에 속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가정폭력 및 연애폭력** - 연애 폭력은 연애 중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간주한다. “가정폭력”은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산 성폭력 피해자와 배우자 관계,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행위자 사이의 아이가 있는 관계, 동거인 관계, 혹은 캘리포니아 법에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라고 정의되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흉악 범죄를 일컬으며, 성인이나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합의적 성적접촉** - 불합의하에 일어난 성적접촉은 여자나 남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고의적으로 신체에 본인의 신체 혹은 다른 물체들을 사용해 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불합의적 성관계** - 불합의하에 일어나는 성관계는 (항문, 입, 질을 통한) 여자나 남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침해** - 성적 침해는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적 행위를 이행한 경우이다. 요구되지 않거나 불쾌한 성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 강제적 성적 요구를 하거나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성폭행이나 성범죄 등의 행위를 성적 침해라 한다.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성적 침해로 간주한다.

행위에 대한 굴복여부가 개인의 고용 및 프로그램이나 수업 혹은 참여 활동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경우

행위에 대한 굴복 혹은 거부를 취업 및 입학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개인의 실적이거나 교육 경험을 방해할 목적 혹은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 있을 경우

**성폭력행위자** - 성폭력 행위자는 이 정책에 의해 성 차별을 가한 개인을 의미한다.

**책임자** - 책임자는 학교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성 폭행 사건이 보고되었거나 일어났을 경우 학생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성차별** - 성 차별은 개인의 성별로 인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혹은 취업 기회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 차별의 예로는 성적 침해, 성폭행, 평등한 고용기회와 교육 프로그램 박탈 및 임신으로 인한 차별 등이 있다.

**성폭행** - 성폭행은 부적절하거나 위법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써, 강간, 불법 신체 침해 그리고 성적 강압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정의되어 있듯이, 강간은 합의되지 않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협박이나 폭력 혹은 보복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불법 신체 침해는

합의되지 않은 생식기 접촉, 생식기 주변 부위를 가리는 행위, 그리고 강제적으로 생식기 만짐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성적 강요** - 성적 강요는 (신체적, 언어적 혹은 감정적) 강압, 술, 약물 혹은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지나 의견에 대한 존중없이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을 말한다.

**성적 착취** - 개인이 본인 혹은 착취 당하는 대상 이외의 누군가의 혜택이나 이득을 위하여 합의되지 않거나 폭력적인 성적 착취를 상대방에게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성적 착취, 성희롱,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을 포함한다.

**성범죄** - 성범죄는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없는 채 (예: 연령, 약물이나 음주, 혹은 지적 장애나 다른 장애로 인해 의사를 표현 못할 경우),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범죄에는 강간, 성희롱, 불법 신체 침해, 그리고 성적 강압이 포함된다. 성범죄는 학교 근무자, 학교내 학우, 혹은 제 3 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모든 성범죄 행위는 Title IX 에 명시되어 있는 성적 차별에 속한다.

**스토킹** - 스토킹은 개인이나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괴롭힘 당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은 여러가지 형태의 괴롭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컴퓨터 상에서 (사이버 스토킹) 일어나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토킹은 죽이려는 의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 혹은 협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행동, 나아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공포에 떨거나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 3.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와 방안

#### A. 사건 보고

WMU 는 어떤 형태의 성적 차별이든 상관없이 고소인이 사건을 신속하게 보고하여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보조를 받거나 학교가 정해놓은 법적 정책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WMU 는 성폭행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폭행 피해자의 안전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쓴다. WMU 는 성적 차별을 직접 당했거나 혹은 목격한 사람들이 학생처장이나 이러한 사건의 담당자에게 사건을 보고하기를 권장한다.

성폭행피해자에게서 부터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의 담당자는 성폭행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i) 사건 담당자는 성폭행피해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사건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진술받아 보고할 의무가 있다 (ii) 성폭행피해자는 학생처장에게 비밀보장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iii) 성폭행피해자는 상담, 변호,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서비스를 비밀이 엄수된다는 믿음 하에 받을 수 있다.

만일 제 3 자에 의해 사건이 보고된다면, 성폭행 피해자는 학생처장으로 부터 사건 보고를 통보 받을 것이다. 학생처장이나 권한이 위임된 담당자는 성폭행 피해자를 만나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학교 및 학교 외에서 제공하는 방책에 대해 논의한다.

## B. 기간

해당 학교는 신속하고 철저히하며 공평한 해결책을 모든 성폭행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기밀 조사 보고가 끝나고 나면, 성폭행피해자와 성폭행행위자는 사건 결과를 닷새 안에 (주말 제외) 통보받는다. 모든 조사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며, 초기에 사건이 접수되고 60 일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한다. 증인이나 적절한 증거가 없을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 배제한다.

## C. 임시 방안

조사 기간과 사건 해결이 진행될 동안, 학생처장이나 담당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임시 대책이 마련된다. 성폭행 피해자와 성폭행 행위자의 접촉 제한, 캠퍼스 내 접근금지, 그리고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을 어길 경우,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추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 D. 제한적 면제

해당 대학은 사건을 보고하는 개인이 사건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 등 다른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에 본인이 해당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건 보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사건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대학은 사건 보고를 하는 개인이 얼마만큼의 제한적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정한다. 이들이 행한 정책 위반이 완전히 간과될 수는 없으나, 대학은 가혹한 징계를 내리기 보다 수업 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 E. 비밀 엄수의 의무

성적 착취,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 사건을 밝힌 이는 학교 근무자가 그러한 성적 행위에 대해 학생처장에게 보고를 올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보고, 조사 및 문의는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은 사건에 연루된 성폭행 행위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WMU 는 성적 착취, 성희롱,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과 관련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한다. 대학의 Title IX 법을 이행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학교 근무자들을 포함, 학생처장, 그리고 Grievance Committee

위원들이며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기밀 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다. 철저한 보고 및 평가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모든 과정에서 우선시 된다.

비밀유지란 해당 학교나 공동체에 일하는 근무자가 개인과 공유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누설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캠퍼스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위협에 처할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만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러한 비밀 유지 관련 사항들은 주 법률에 의거한다.

#### F. 보복에 대한 금지

Title IX 에 나와 있는 차별에 대해 진술한 사람이나 사건과 관련된 소송절차에 협조하는 사람, 즉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행위자, 그리고 증인 등 사건 관련인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보복과 관련된 일에 연관된 사람은 학생표준규약 (Student Standards of Conduct)에 의하여 사건과는 별개로 구분될 것이며, 퇴학 혹은 해고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 G. 허위 고소인

사실이 아닌 허위 신고를 하는 고소인은 학생 신분 박탈 혹은 근무자의 경우 해고 대상에 해당된다.

#### H.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학교 내:

학생 처장실

학교 밖:

Project Sister, (909) 626 – HELP, [projectsister.org](http://projectsister.org)

National Sexual Assault, (800) 656 – HOPE, [rainn.org](http://rainn.org)